

## 예      산      총      칙

제 1 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    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     계	22,950,615	688,519
일      반      회      계	15,533,132	465,994
특      별      회      계	7,417,483	222,525
기타특별회계	7,417,483	222,525
율촌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	7,417,483	222,52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,829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5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재정보전금, 특정목적기부금,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(성립전집행)하고 조합회의에 사후 보고한다.